

중국 WTO 가입 2주년 세미나

# 도소매 유통 진출전략

2003. 12. 5

 **KOTRA** 국제회의장

##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03. 12. 5(금) 14:00~17:00
- 장소 : KOTRA 지하1층 국제회의장
- 주최 : KOTRA, 일본 변호사법인 CAST, 장원법률사무소

## ◆ 일정

- 14:00~14:10 인사말 (엄성필 KOTRA 해외조사팀장)
- 14:10~14:30 기조강연 : 중국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동향과 전망  
(장원법률사무소 박균제 대표 변호사)
- 14:30~15:30 주제강연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  
-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무역업의 개방  
(일본 변호사법인 CAST 조성철 변호사)
- 15:40~16:20 토론(패널 :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양평섭 연구위원)
- 16:20~17:00 업계 질의응답

## ◆ 연사 및 패널 약력

### ○ 박균제 장원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199 1 육군 법무관
- 1991 변호사 개업(Kim & Hwang)
- 1998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 1998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석사  
학위(M.L.I.) 취득
- 2003 사법연수원 국제계약실무 강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국제거래법 강사

- 이메일 : kjpark@jangwonlawfirm.com

### ○ 조성철 일본 변호사법인 CAST 변호사

- 1991           일본 간사이대학 졸업
- 1993           일본 사법시험 합격
- 1996~1997    한국, 중국 유학
- 오사카 신사이바시종합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CAST 오사카사무소 대표파트너 변호사
- 전문분야 : 일본-중국기업간 국제거래계약서 작성, 국제상사중재, 중국투자  
              컨설팅. 일본 상장기업 워크아웃 및 주주총회 지도 등
- 이메일 : cho@castlaw.com

### ○ 박한진 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

- 198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 1988        한국외대 대학원 아시아지역연구학과 졸업(중국정치경제학 석사)
- 1989~1992  공군사관학교 교수(중국어)
- 상하이 復旦大學 기업관리 박사과정(중국진출 다국적기업관리 전공)
- 재정경제부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 주요 저서, 보고서
  - 박한진의 차이나포커스, 도서출판 오상, 2002
  - 중국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2001
  - WTO 시대의 중국경제와 한국의 선택, 2001
  - WTO 중국시장을 꼭 잡아라, 2001
  - 홍콩 재수출시장을 꼭 잡아라, 2000
  - 중국 유통시장 이렇게 공략한다, 1997
  -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 해설서, 1996
  - 중국투자 : 합자기업관계법 분석, 희성출판사, 1992
  -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개혁 연구<이데올로기의 변용을 중심으로>, 1988

- 중국경제관련 강연, 기고 300여 회
- 이메일 : chinapark@kotra.or.kr

○ 양평섭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 1987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 2003 현재     한국외국어대학 지역대학원 박사과정
- 1989~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역
- 1995~1998    대우경제연구소 해외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 1998~1999    대우경제연구소 북경 주재원 근무
- 1999~2001    대우경제연구소 중국사업전략팀장
- 2001            이차이나센터(주) 중국경제연구소 소장
- 중국경제포럼, 중국통상학회, 여의도중국경제포럼, 중국연구회 회원
- 주요 보고서, 프로젝트 실적
  - 대중국 투자전략과 실무, 국제민간경제협의회(1991)
  -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 투자, KIEP (1992)
  -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KIEP 지역정보센터(1993)
  - 중국의 WTO 가입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KIEP(2000)
  -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의 무역장벽 변화, 한국무역협회(2002)
  - 2003년 대중국 수출 환경과 수출전망, 한국무역협회 (2002년) 외 다수
  - 중국내 재무공사 설립 가능성 보고서, 대우(중국)유한공사(1999)
- 이메일 : psyang@kotis.net

---

목 차

---

[기조강연] .....

중국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동향과 전망

[주제강연]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

-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무역업의 개방

[패널토론] .....

[업계 질의응답] .....

[참고자료(관련 법규)] .....

기조강연 14:10~14:30

---

# 중국 WTO 가입이후 외국인 투자동향과 전망

---

박 균 제  
장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중국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동향과 전망

안녕하십니까?

장원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박균제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WTO 정식 회원국이 된지 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국의 WTO가입 이후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의 공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소평이 중국의 대외 개방개혁정책을 천명한 1978년 12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분야에서 발군의 성과를 이룩해 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01. 12. WTO에 가입한 이후 상황은 더욱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정책도 급속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필연적인요구이며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점차적으로 은행, 보험, 대외무역, 여행업 등의 서비스 영역을 개방하면서 통일적이며 규범적이고 투명한涉外관계 법

---

률법규를 제정하여 섭외경제에 관련된 법률행정규범의 수준을 제고하고 건전한 국제통상규칙과 중국자체의 대내외 경제무역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자체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의 소망일 것입니다.

중국은 많은 대외성명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투자와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더욱 고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행정관리시스템을 규범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경영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한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것임을 약속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부의 의지는 연간 500개 이상 공포되는 새로운 법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중국은 이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협력 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 등 세 가지 외국 투자자의 직접투자에 관한 기본법률 및 실시세칙에 대한 수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에는 균형 조항, "현지함유량" 조항, 수출업적 요구와 기업 생산계획 등록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사항에 따라 전면적이고, 다각적이며, 다양한 분야의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1일은 WTO 가입 당시 중국이 약속한 국내시장의 개방, 개방 분야와 지역의 확대, 금융, 보험, 전기통신, 무역, 관광 등 서비

스 분야의 점진적인 대외 개방, 외자 이용을 위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수단 개척 등의 첫번째 약속실행 기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당초 약속했던 서비스와 무역 영역에서 서비스 및 무역 부문에 새로운 외국인자본이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일련의 심사비준 법규와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외국 법률사무소 주 중국 대표기구 관리조례",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금융기구 관리조례", 외자 보험회사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 조례", "중외합자 음악, 비디오 제품판매 기업관리 방법", "국무원의 여행사 관리조례"의 수정에 관한 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수입 할당액 관리 실시세칙", "특정상품 수입관리 세칙", "농산품 수입관세 할당액 관리방법" 등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밖에 WTO가입 때의 약속에 따라 중국은 이미 일련의 WTO규칙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 법규를 수정하고 폐기했습니다.

동시에 일련의 새로운 법률과 법규를 계속 공포했습니다. 그 중 "중화인민공화국 반 덤핑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 조례"는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로서 우려해야 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투자유치는 물론 국내 경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빨

---

리 중국내 비국유기업의 업종 진입의 제한을 제거하여 여러 종류의 합법적 경영주체가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도 사실상 대다수의 업종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진입제한이 여러 종류,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 시장의 분할과 지방보호도 완전히 해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전화, 통신, 전력, 석유화학, 철도, 민항 등의 중심산업 독점과 공공사업 성질의 업종에 대한 개혁과 개편의 진행을 가속화하여 행정독점이 타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중국사회의 특수적인 요인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연안지역과 내륙지방의 빈부차이의 해소책으로 서부대개발 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숙제의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값싼 자원과 노동력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임금수준의 상승과 물가의 인상은 중국을 계속 이상적인 투자대상국으로 유지시켜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경제의 발전과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무역투자, 산업협력, 서비스업 등 각 방면에 있어 주변국과 세계 각

국에게 더욱 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중국경제의 발전과 개혁개방의 심화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 발전, 특히 중국과 한국의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발전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강연 14:30~15:30

---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

##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무역업의 개방

---

조 성 철

변호사법인 CAST 파트너 변호사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

##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무역업의 개방

### 1. 중국 개혁개방이후의 법률 변천과정 분석의 필요성

- 중국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중국 개혁개방  
역사의 이해

### 2. 개혁개방전의 중국

- 중공업 담당의 기관
- 농업 담당의 기관

### 3. 개혁개방

- (1) 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외국의 사유자  
본에 의한 사유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나?

---

(2) 왜 1986년 까지 외자독자기업을 인정하지 않았나?

(3)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의 차이는?

#### 4. 천안문 사건 이후

(1) 1992년 남순강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2) 1995년 12월 발표된 국가세무총서의 행정통지

#### 5. 도소매서비스기업 및 수출업에 대한 개방

(1) 도소매서비스 기업의 개혁개방 당시 상황  
- 왜 "수출입, 도매 및 소매" 분야는 1992년 까지 외국회사에 개방되지 않았는가?

- (2) 1992년
  - 제한적 인정과 지방정부 불법허가 사태의 발생
- (3) 1995년에 발표된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 목록이란?
- (4) 1996년 9월 30일  
수출입 개방과 관련 그 조건?
- (5) 1998년 1월1일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의 수정
- (6) 1999년 6월25일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  
방법 제정
- (7) WTO 가입의 원인(장/단점)
  - 가) 장점
    - A. 최혜국 대우의 보장
    - B. 내국민 대우

---

C. 대만과 동시 가입

나) 불이익

A. 관세율 인하

B. 비관세장벽의 불가피한 철회

C. 외자서비스무역 등의 시장개방 불가피

다) WTO 가입의 약속내용

ex)서비스무역업

A. 대리점 및 도매업무(담배, 소금 제외)

- 2002년 12월 11일 내에 외국 서비스제공자가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해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막, 화학비료, 가공유 및 원유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 2003년 12월 11일 내에 외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가한다. 모든 성 중심도시 및 영파나 중경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2004년 12월 11일내에 외자기업의 지분 소유형식의 제한을 철폐하고, 외자기업이 독자의 형식으로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며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막분야의 위 서비스의 경영을 허가한다.
- 2006년 12월 11일내에 화학비료, 가공유 및 원유 서비스의 경영을 허가한다.

## B. 소매업(담배제외)

- WTO 가입과 함께 5개 경제특구 및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 정주, 무한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 북경 및 상해에 4개의 합자 소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또 다른 기타 지역에 최대 2개의 합자소매 기업의 설립을 허가한다.
  - 북경의 2개의 합자기업이 시내에 분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2002년 12월 11일 내에 도서, 신문, 잡지의 소매를 허가하고, 2004년 12월 11일 내에 약품, 농약, 농막, 가공유, 원유서비스의 경영을 허가한다. 또, 2006년 12월 11일내에 화학비료의 소매서비스경영을 허가한다.
  - 2003년 12월내에 외자기업의 다수지분 소유를 허가하고 모든 성의 중심도시 및 영파, 중경의 소매업을 개방한다.
  - 분점을 3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체인점

및 자동차판매(5년내), 약품, 농막, 가공유(3년내), 화학비료(5년내)는 외국회사의 다수지분 소유를 허가하지 않는다.

### C. 특허경영

- 2004년 12월 11일내에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허가 한다.

(8)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장벽

## 6. 도소매서비스에 관한 전략

(1) CEPA의 체결과 그 내용

가) CEPA 체결의 배경

나) CEPA의 내용

---

(2) 지주회사(Holdings Company)의 활용

가) 지주회사의 설립조건

나) 지주회사 설립의 메리트

다) 지주회사 활용의 문제점

라) 중국정부의 고민

(3) 보세구

가) 현재 전국에 15개 보세구

나) 보세구의 활용

(4) 기타.☐

패널토론 15:40~16:20

---

## 참석패널

---

박 한 진

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

양 평 섭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업계 질의응답 16:20~17:00

---

## 자유질의 및 응답

---

참고자료

---

## 관련 법규

---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보충규정(1)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보충규정(2)

#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

1999년 6월 25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2호

**제1조** 대외개방을 일층 확대하고 상업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시장 건설을 추진하여 상업분야의 외상 투자유치 확장 시범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외국 회사·기업이 중국 회사·기업과 중국 경내에서 중외합자 또는 합작 상업기업(이하 합영 상업기업이라 약칭함)을 설립하는 데 적용한다. 외상 독자 상업기업의 설립은 당분간 불허이다.

**제3조** 합영 상업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소재 도시의 상업발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국제 선진적인 판촉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국내 상업현대화를 촉진하고 국내제품의 수출을 선도하고 양호한 경제 및 사회 효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합영 상업기업 설립 지역은 국무원이 규정하며 당면에는 성소재지 도시,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독

---

배정시, 경제특구(이하 시범지역이라 약칭함)에 한한다.

**제5조** 합영 상업기업의 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외국합영자 또는 외국합영자중의 주요 합영자(이하 외국합영자라 약칭함)는 보다 강한 경제실력, 선진적인 상업경영관리경험과 판촉기술, 광범위한 국제 판매망, 양호한 신의와 경영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설립하고자 하는 합영 상업기업을 통하여 중국제품의 수출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매업 종사 합영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 신청하는 외국합영자는 그 신청전 3년간 연 평균 상업 매출액이 20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은 2억불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업 종사 합영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 신청하는 외국합영자는 그 신청전 3년간 연 평균 상품 도매액이 25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은 3억불 이상이어야 한다.

- (2) 중국합영자 또는 중국합영자중의 주요 합영자(이하 중국합영자라 약칭함)는 보다 강한 경제실력과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 유통기업이어야 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이

인민폐로 5,000만원(중서부 지역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중 중국합영자가 상업기업일 경우 신청전 3년간의 연 평균 매출액이 인민폐로 3억원(중서부 지역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외무역기업일 경우 신청전 3년간의 연 평균 자사 경영 수출액이 5,000만불(그중 수출액이 3,000만불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합영 상업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소재 도시 상업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3)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5,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중서부 지역은 인민폐로 3,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8,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중서부 지역은 인민폐로 6,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4) 3개 이상 지점 체인방식으로 경영하는 합영 상업기업(편의점·전문점·전매점은 제외)의 중국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51%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합영 상업기업 자체 경영상황이 비교적 좋고 외국합영자가 이미 국내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했고 외국합영자의 국제 판촉망에 의하여 국내제품의 수출을 일층 확대할 수 있는 합영 체인 상업

---

기업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합영자의 지분 지배를 허용한다.

3개 이하 지점(3개 포함)을 개설한 합영 상업기업과 체인 방식으로 경영하는 편의점·전문점·전매점의 중국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35%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도매업(소매기업의 경영 도매업 포함)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 중국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51% 이상이어야 한다.

(5) 합영 상업기업의 지점은 중외 쌍방이 직접 투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직영 체인 형식에 한하며 자유체인, 특허체인 등 체인 형식은 당분간 불허이다.

(6)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서부 지역은 4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외국합영자와 합영 상업기업이 상표·상호 사용 허가 계약 또는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외국합영자가 인출하는 상관 비용은 누계로 합영 상업기업의 당년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3%를 초과하지 못하며 인출 연한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합영 상업기업의 설립 수속은 하기 절차를 따른다. 중국합영자 소재 시범지역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계획 및 경제위원회, 이하 동일)에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를 대체) 및 관련 서류를 회부하고 시범지역 경제무역위원회는 국내무역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 절차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의견을 청구한 후 심사 비준한다.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를 대체)를 비준 받은 후 시범지역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계약과 정관을 회부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계약·정관을 심사 비준한다.

비준을 받고 설립한 합영 상업기업은 비준증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수속을 밟는다.

**제9조** 합영 상업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당성 연구 신고서류

- ① 합영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 대체)
- ② 합영 각측의 은행자금신용증명, 등기 등록증명(사본), 법정대표자 증명(사본)

- 
- ③ 합병 각측이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3년 간의 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④ (중국 합병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할 경우)중국측의 불입할 국유자산 평가보고에 대한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 문서
  - ⑤ 설립할 합병 상업기업의 경영 상품종류
  - ⑥ 기타 관련 서류

(2) 계약·정관 신고서류

- ① 타당성 연구 신고서류 및 그 비준문서
- ② 합병 각측의 수권대표가 사인한, 설립할 합병 상업기업의 계약·정관
- ③ 수출입 상품 목록
- ④ 설립할 합병 상업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합병 각측 이사 위임장
- 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시한 기업명칭 심사비준 통지서
- ⑥ 기타 관련 서류

상기 서류는 사본이라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로 정식서류여야 한다. 비법정대표자가 사인한 서류는 법정대표자의 위탁수권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유 유통기업이 합병 상업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에는 《국유자산 평가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부서에서 확인한 평가기구에서 국유 유통기업이 투입하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과

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성급 이상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국유자산을 투입하는 가치평가 의거로 한다.

**제11조** 이미 설립된 합병 상업기업이 도매업 경영, 지점 개설, 합병측 변경을 신청할 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 비준하며 이미 설립된 합병 상업기업의 기타 변경은 현행 외상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을 받을 때 합병 상업기업은 하기 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 (1) 신청보고서
- (2) 기업의 경영상황보고서
- (3) 기업의 험자보고서
- (4) 기업의 수출상황보고서 및 증명서류
- (5) 이사회 관련 결의
- (6) 계약·정관 수정합의서
- (7) 기타 관련 서류.

기업은 수정후의 계약·정관 비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합병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 (1)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병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 ① 상업 소매(대리판매, 위탁판매 포함) 경영

- 
- ② 국내제품의 수출업무 알선
  - ③ 자사 경영 상품의 수출입업무
  - ④ 경영 관련 일식 서비스

(2) 도매업을 경영하는 합영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국내상품과 자영 수입상품의 국내 도매, 국내제품의 수출  
알선

**제13조**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 도매업을 겸영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 상업기업은 상품 수출입 대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 합영 상업기업이 국가의 특별 규정이 있는 상품, 쿼타·허가증 관리와 관련되는 수출입상품 경영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영 상업기업의 연도 상품 수입총액은 당년 본 기업 상품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 합영 상업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법률·법규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그 정당한 경영활동 및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합영 상업기업이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각지에서 합영 상업기업 설립시에는 엄격히 이 방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회동하여 조사 처리한다. 각지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시범상황을 적시에 추적하고 시범경험을 열심히 총화하여 시범에서 발로되는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제18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그 수권기구는 법에 따라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감독 및 관리한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조국 대륙에 설립한 합영 상업기업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1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 규정

1995년 4월 4일  
外經貿部 령제4호

외국 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국외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외국투자 관련 중국 법률·법규 및 본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성회사(이하 지주회사라 약칭)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1조** 본 규정에서 지주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중국투자자와 합자형식으로 설립하여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회사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제2조**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1)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 1년전의 동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4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고, 3개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제안서가 이미 비준받

있어야 한다. 또는 (2)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 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이미 10개 이상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액이 3000만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2. 합자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 투자자는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1억원(인민폐) 이상이어야 한다.
3.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이 3000만달러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투자자는 설립하려는 지주회사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부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약칭함)에 보고하여 심시비준받아야 한다.

1. 합자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프로젝트제안서, 투자 각측이 서명한 타당성조사보고서, 계약, 정관  
 독자로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외국투자자가 서명한 프로젝트제안서, 외자기업신청표, 타당성조사보고서, 정관
2. 투자 각측의 자산신용서류, 등록등기증명서(사본)와 법인

---

대표증명서(사본)

3. 외국투자자의 기존 투자기업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과 중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산검증보고서(사본)
4. 투자 각측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5. 외경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에서 사본이라고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서류일 경우에는 법정대표자의 위임을 제출해야 한다.

법에 의해 설립된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신청수속을 대리하게 할 때에는 투자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위임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 화폐를 지주회사 등록자본의 출자로 할 수 있고 중국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금은 영업허가증을 서명발급한 날부터 2년 내에 납부완료해야 한다.

**제5조** 지주회사는 비준을 거쳐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할 수 있다.

1. 국가가 외상투자를 권장하고 허용하는 공업·농업·기초 시설·에너지 등 영역에 대한 투자
2. 지주회사는 그가 투자한 기업의 서면위탁(이사회 동의 를 거쳐야 함)을 받고 그 기업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그 회사가 투자한 기업을 협조 또는 대리하여 국내외에 서 동 기업의 자체용 기계설비, 사무설비와 생산에 필요 한 원자재, 부품을 구입하고 국내외에서 그 지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 (2) 외환관리부문의 동의와 감독하에 지주기업간에 외화의 균형을 맞춘다.
  - (3) 지주기업에 협조하여 직원을 모집·초빙하고 기술훈련, 시장개발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지주기업에 협조하여 대부금을 얻고 담보를 제공한다.
3. 지주회사는 그 투자자를 위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 본 규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지주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아래의 경우를 지칭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투자했거나 기타 외국투자자와 또는 중 국투자자와 공동 투자하였고 지주회사 또는 기타 외국투 자자의 출자가 투자설립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 지하는 기업

- 
2. 지주회사가 그 투자자 또는 그 관련회사 및 기타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이미 투자설립한 기업의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지주회사 및 기타 외국투자자의 출자액이 이미 설립한 기업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외경무부의 특별비준을 거친 외에 지주회사는 위에 서술한,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위해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그 투자자를 대신하여 중국에서 무역중개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 지주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 재무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주회사가 실행하려는 프로젝트 성격에 근거하고 국가의 외국투자기업 경영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한을 심사결정한다.

**제9조**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의 심시비준 권한 및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별도로 비준보고한다.

**제10조**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지주회사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의 외환투자비율이 투자하여 설

립하는 기업등록자본의 25% 이상일 때에는 투자하는 기업이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향유하여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1조** 본 규정 제2조 제1호 제(1)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자는 전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 지주회사 설립 신청을 하는 투자자는 심사비준기관에 담보서한을 제출하여 그가 설립하는 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전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담보서한을 제출하여 그 회사가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조건에 따라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의 출자를 완료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이 지주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제13조** 지주회사의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활동은 회사등록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지주회사의 과세는 중국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

**제15조** 지주회사는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매년 투자상황을 다음 연도의 첫 3개월 이내에 외경무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지주회사와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피차 독립적인 법인 또는 실체이고 그 업무거래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업무 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지주회사와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관리와 납세를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대만·홍콩·마카오 지구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발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보충규정(1)

1999년 8월 2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1999] 제3호

다국적 회사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국외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지주회사의 기능을 완벽히 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5년 4월 4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은 3,000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지주회사의 차입금은 이미 불입한 등록자본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경영수요에 따라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이미 불입한 등록자본의 4배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지주회사가 중국 경내에 R&D센터 또는 부서를 설립하고 신제품 및 하이테크 R&D에 종사하여 그 R&D성과를 양도하는 동시에 상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지주회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대리 또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4. 지주회사는 그 투자기업에 운수, 창고보관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지주회사는 수출쿼타, 수출허가증 관리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경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다.
  6. 지주회사가 이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나열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수정후의 지주회사 계약·정관 등 관련 신청서류를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이 계약·정관 규정에 따라 규정 기간내에 불입되었고 실지 불입된 등록자본이 3,00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지주회사가 이 규정 제3조, 제4조에 나열한 경영활동을 그 투자기업에 제공할 경우 그 투자기업의 등록자본에서 점한 출자비율이 10%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그 투자기업의 서면 위탁서(그 투자기업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

7. 이 규정은 1996년 2월 16일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관련 문제 해석》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8.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 보충규정(2)

2001년 5월 31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1년 제1호

다국적 회사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국외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의 기능을 완벽히 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5년 4월 4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지주회사가 그 투자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회사, 대리회사, 그리고 지주회사 및 그 본사와 기술양도합의를 체결한 국내회사, 기업에 관련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지주회사가 발기인으로서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의 비상장 법인주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를 주식회사의 경외 발기인으로 간주한다.
3. 지주회사가 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시스템 집성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시스템 집성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시스템집성에 수요되는 설비를 구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구입한 시스템 집성 관련 설비 가치가 시스템집성에 소요되는 전부 제품 가치의 50%

---

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지주회사의 투자기업이 개업 전에 또는 그 투자기업이 신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시장의 개발을 목적으로 원 심사 비준부서의 동의를 거쳐 지주회사가 그 본사로부터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수입권타 관리에 속하는 소량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판하는 것을 허용한다.
5. 지주회사가 상기 시스템집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시판 제품 수입시에는 지주회사의 등록자금중 현찰 출자자금, 외환이윤 또는 경외 외환차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수입금액은 매년 누계로 회사 등록자금 현찰 출자자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당년 수입금액이 회사 등록자금중 현찰 출자자금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잔여부분은 차기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6. 지주회사가 이 규정 제1조, 제3조, 제4조에 나열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개정후의 계약, 정관 등 관련 신청서류를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지주회사의 등록자금을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불입 완료하였고 실지 불입한 등록자금이 3,000만불 이상일 것

(2) 법에 따라 경영하고 불법기록이 없을 것.

7. 지주회사는 매 연도의 투자, 경영상황을 차기 연도의 전 3개월 내에 규정한 내용과 서식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상기 서류를 지주회사가 연합연차검사시 신고하는 필수서류중의 하나로 해야 한다.
8. 이 규정이 1996년 2월 16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 관련 문제 해석》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9.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㉔